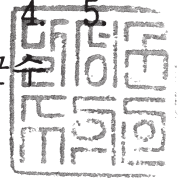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934 |
|----------|------|

제출일자 : 2021. 4.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근거, 지원되는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다.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라. 지도점검,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 (3) 장애인복지법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조례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편성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1. 2. 26. ~ 2021. 3. 22.)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필요 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2. 장례업체·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 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전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 읍·면장은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  |
|----------------------------------------------------------------------------------------------------------------------------------------------------------|-------|------|-------|--|---------------|------|--|
| <b>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b>                                                                                                                                      |       |      |       |  |               | 처리기간 |  |
|                                                                                                                                                          |       |      |       |  |               | 7일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망 자<br>와의관계 |      |  |
|                                                                                                                                                          | 주 소   |      |       |  |               |      |  |
|                                                                                                                                                          | 연 락 처 |      | 핸드폰번호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
|                                                                                                                                                          | 주 소   |      |       |  |               |      |  |
|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 사망일자 |       |  |               |      |  |
|                                                                                                                                                          |       | 장례일자 |       |  |               |      |  |
| 장례 수행자                                                                                                                                                   |       |      |       |  |               |      |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br/><br/>             신청인                                  (인)           </div> |       |      |       |  |               |      |  |
| <b>달 성 군 수 귀증</b>                                                                                                                                        |       |      |       |  |               |      |  |
| [구비서류]<br>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br>(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br>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br>(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       |      |       |  | 수수료           |      |  |
|                                                                                                                                                          |       |      |       |  | 없 음           |      |  |

##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

| 구 분             | 사 진                                                                                                                               |
|-----------------|-----------------------------------------------------------------------------------------------------------------------------------|
| 빈소(제례실)<br>사 진  |                                                                                                                                   |
| 염 습<br>(수의 착용)  |                                                                                                                                   |
| 입 관<br>(관 속 안치) |                                                                                                                                   |
| 결과 보고<br>구비서류   | 1.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 사진)<br>2. 공영 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장제비 영수증 첨부)<br>3. 화장 증명서 사본 1부<br>4. 공설 시설 사용허가증(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



## 참고

## 상위 및 관계 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1~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2(연고자)법 제2조제1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 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